【 2015.10.29(목) 강원일보 】

**시설공사 계약관계자 합동 워크숍** 강원지방조달청(청장:한윤자)은 28일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계약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달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5.10.29(목) 건설경제 】

# 건설 종사자 10명 중 7명, 月 300만원 못 번다

## 통계청, 고용조사

### 10명 중 6명 임시·일용직
### 40~50대 비중, 절반 넘어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월급으로 100만~3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 종사자의 60% 가까이가 임시·일용직이었고 40~50대 종사자가 절반을 넘었다.

28일 통계청이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을 주제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월급 100만~200만원 미만이 35.9%, 200만~300만원 미만이 34.5%였다.

건설업 종사자의 70.4%가 월급으로 적게는 100만원대 초반에서 많게는 200만원대 후반을 받고 일한다는 얘기다.

1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는 종사자는 4.0%였고 300만~400만원 미만이 15.5%, 400만원 이상이 10.1%였다.

건설업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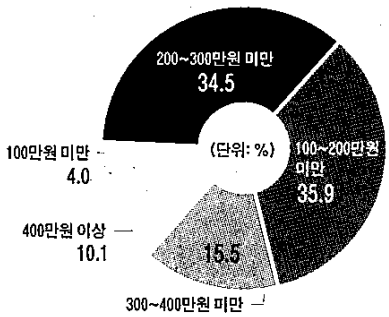


또한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58.2%였고 상용직이 41.8%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2.9%로 집계됐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40~49세의 종사자가 29.1%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27.2%, 50~59세가 22.4%, 15~29세가 15.3%, 60세 이상이 5.9%로 그 뒤를 이었다. 40~50대 종사자가 전체의 51.5%로 절반을 웃돌아 건설현장이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 종사자의 성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91.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자는 8.5%에 불과했다.

직업별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36.8%였고 사무 종사자(2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7.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5%), 단순노무 종사자(9.6%), 판매 종사자(2.3%), 관리자(1.4%), 서비스 종사자(0.3%) 등의 순이었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 비율이 전체의 49.1%에 달했고 대졸 이상이 31.5%, 중졸 이하가 19.4%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종사자는 100만~300만원 미만, 임시·일용직, 40대, 남성, 고졸 등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 2015.10.29(목) 건설경제 】

## 금융당국, 건설·조선업 회계방식 대수술

# 건축·플랜트 사업부문별 원가공시 의무화

### 미청구공사·충당금 등 변동률 추가 공시해야
### '핵심감사제' 도입키로
###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토목, 건축, 플랜트 등 사업부문별로 총 예정원가를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당초 사업장별로 원가를 공시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여전히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지 10월 21일자 1면, 10월 26일자 16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회계기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계는 총 예정원가를 분기 단위로 평가해 변동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로 공시해야 한다. 토목, 건축, 플랜트, 기타 등 부문별 원가총액을 공시해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미다. 주요 사업장별 공시는 영업기밀 유출과 발주처 협상력 저하라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내부 감사기구에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매출액 대비 5% 이상 규모의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미청구 공사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마다 재평가하고, 회수 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과 관련한 회계 처리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그 적정성을 감사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KAM)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핵심감사란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회계사는 건설이나 조선업종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테마 감리 주제를 수주산업 관련 회계 이슈로 선정하고, 테마 감리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가장 민감했던 사업장별 예정원가 공시가 철회돼 다소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부문별 원가 공개나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공시는 기업의 영업과 기술 노하우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은 "사업장별 미청구공사와 충당금을 공시하는 것은 채권 회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발주자와의 협상력 약화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또한 회계처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의 회계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업계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길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연결 등이 원활하지 않은 해외 현장의 부문별 원가 변동내역을 제때 반영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당장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

아하! 그렇구나

## 공사원가계산서의 축소 조작과 손해배상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맞춰 설계금액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즉 설계도면 및 시방서, 수량산출조서는 그대로 둔 채 예산에 맞춰 공사비내역서(특히 노무비 부분)만 조작하여 설계금액을 예산의 범위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찰에 부치는 예정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낙찰금액과 공사도급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공사비내역서가 축소, 조작되어 입찰이 진행되는 바람에 계약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대법원은 수량산출조서와 공사비내역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찰공고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사예정금액을 예산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러 노무비를 축소하도록 설계용역업자에게 지시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설계에 대한 준공검사, 설계금액의 공고, 예정가격의 결정 등 사무를 담당한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건축사가 설계용역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완료하였는지 검사, 확인하는 동시에 이 사건 공사부분의 실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공사원가계산서는 공사비내역서 부분과, 공사비내역서 부분은 수량산출서 부분과 각각 대조하여 상호 상이함이 없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는 건축적산전문가 또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입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량산출서 부분을 공사비내역서 부분과 전혀 대조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원가계산서가 축소 조작되었음을 간과하여 이 사건 공사부분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축소 조작된 공사원가계산서대로 설계금액을 공고하였다면, 위 담당 공무원에게 사무 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 27722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2015.10.29(목) 건설경제 】

NEWS &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간접비 문제' 해결사 역할 기대

# '발주처-건설사' 공사비 갈등…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의 대림산업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 간접비 조정 사례는 시공사의 귀책 없는 간접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회분쟁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면서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시공사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값비싼 '법적 소송' 대신 비용이 없는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간접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건설사 간 소송은 수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3~5년간의 소송업무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 소송 진행땐 수억원 비용·시간 걸려
## 대림산업 조정 청구 4개월만에 성과

반면 조정은 50일(30일 연장 가능) 정도 걸리며,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실제 대림산업은 지난 5월 분쟁위에 조정을 청구한 뒤 4개월여 만에 최종안을 받았다.

소송이었다면 1심도 채 끝나기 어려운 기간이다.

조정 대상도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사항 이외에 계약금액 조정과 지체상금,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면서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등을 분쟁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발주처의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소송도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무원 처지에서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을 때 간접비를 지급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한다. 소송에는 보통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때쯤이면 책임을 질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대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이번 조정 사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간접비를 발주처가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의미뿐 아니라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위의 조정 결과가 증가하는 건설사와 발주처 간 간접비 논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분쟁위의 소극적 운영 방식과 조정위원의 공무원 편중 구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분쟁위는 사무국이 없는 비상설 기구여서 전담 인력이 없는 등 전문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다.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 계약상 최소금액이 70억원으로 제한된 것과 15명의 조정위원 중 민간위원이 단 6명에 그친 문제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금액과 관련된 조정은 첫 사례다. 실질적으로 소송이나 중재로 제한된 갈등의 해법을 조정으로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줬다"면서 "이를 계기로 분쟁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위원 편중 문제 등은 앞으로 개선을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간접비 분쟁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비용을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 2015.10.29(목) 건설경제 】

전문조합, 하도급 공사계약 해지 때 '위약벌→실손보상' 전환 3년

# 잇단 분쟁·늑장 보상… 건설사 경영난 가중

협력업체(전문건설사)의 공사계약 해지 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이행 보증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종합건설사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조합)이 보상 기준을 지난 2012년 10월 '위약벌'에서 '실손보상'으로 전환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골치를 앓는 종합건설사들이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와 전문조합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도급계약 이행 보증금 청구액이 1912억원인데 비해 보증금 지급액은 834억원에 그쳤다. 보증 채권자인 종합건설사가 보증금을 청구해도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보상금액이 40% 초반에 그친다는 얘기다.

**올 1~9월 청구액 1912억 중 보증금 지급액 834억 그쳐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갈등 원도급 종합건설사에 부담**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이란 전문업자 부도 등으로 하도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문조합이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증금 지급이 저조한 것은 전문조합이 지난 2012년 10월 약관을 개정, 위약벌을 실손보상으로 전환한 탓이다.

위약벌이란 공정률이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업체가 과도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일고 전문조합도 보증금 지급으로 수년째 손실을 입자 위약벌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보상으로 바꿨다.

실손보상으로 전환된 이후 손실 관련 소명자료 요구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은 하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입증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갖춘 건설사가 적다 보니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종합건설사들이 울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건설사의 대납(대위변제)금이 보증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도급업체가 기성금을 수령한 채 부도 처리되면 2차 벤더(협력업체)나 자재업체는 원도급(종합건설사)사에 체불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원도급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다.

전문조합의 소명자료 요구와 보증처리 기간 지연으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는 종합건설사들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 기준을 위약벌로 환원할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부 회원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조합원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업체 부도 시 대위변제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원정호기자 won@

# 답답한 건설사들, 건공에 새 상품 개발 요구

종합건설사인 A업체는 올 초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성금을 꼬박꼬박 받아가던 하도급업체(전문업체)가 갑작스레 부도를 내면서 자재업체와 '2차 벤더(협력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원청사인 A업체와 정부 발주기관을 상대로 민원과 탄원 시위에 들어갔다.

자재업체가 크게 소란을 피우자 A업체는 부도 처리된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자재대금과 노무비 등을 대납(대위변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을 담당한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조합)은 실손보상 규정을 들어 대위변제금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성금을 초과해 지불한 자재비나 노무비 등 대위변제한 금액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합社 60% "협력社 부도 때 보상 규정대로 보증금 못 받아" 지급 처리도 평균 200일 걸려 대위변제금 보상보험 검토**

A업체 사장은 "자재업체 탄원으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하도급 대금을 이중으로 지불했지만 실손보상 규정에 막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문조합이 하도급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위약벌'에서 '실손보상'으로 전환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업체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문조합의 보증 이행 회피로 종합건설업체와의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조합 조합원인 전문업체 부도 수는 지난해 71개에서 올해 1~9월 33개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업체 부도로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전문조합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해도 맘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증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실손보상한다며 무리하게 소명을 요구해 경영 어려움이 크다는 게 종합건설사들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실손보상으로 변경된 뒤 종합건설사 60%가 전문건설사 부도 시 하도급계약서상 보상규정대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증금 지급처리 기간도 청구 이후 평균 200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사들은 협력업체가 부도 처리되면 이 업체를 대신해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참다 못한 대한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이를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용역을 발주했다.

보험료를 내고 협력업체 부도 시 대위변제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동일한 건설보험상품이 있으니 이를 벤치마킹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소속 건설사 대표는 "미국은 하도급사 부도로 대위변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이 있다"면서 "건설공제조합이 이를 출시하고 조합의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호기자